★ ⊙

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

문서번호	주택과-34846
결재일자	2014.10.3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주택행정팀장	주택과장	도시관리국장	
신경숙	이규환	박봉주	10/30 윤호중	
협조				

-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-

래미안하이리버(LED교체) 사업변경 승인

2014. 10.

성 동 구

【주 택 과】

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☐ 공약(약속)사업 ☐ 계속사업 ☑ 인센티브/공모사업 ☐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● 구 민 : 유 ☐ ( ) 무 ☑ ● 전 문 가 : 유 ☐ ( ) 무 ☑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☑ (래미안하이리버아파트 입주민) 무 ☐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☐ 환경영향 ☐ 안 전 ☐ 유지비용 ☐ 바른 공공언어 ☑ 성 인 지 ☐ 취약계층 ☐ 장 애 인 ☐ 디 자 인 ☐ 갈등발생 요인 ☐
타자원 활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☐ ( ) 무 ☑ ● 서 울 시 : 유 ☐ ( ) 무 ☑ ● 기 업 : 유 ☐ ( ) 무 ☑ ● 민 간 단 체 : 유 ☐ ( ) 무 ☑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☐ 보 도 자 료 ☐ SDTV ☐ 성동뉴스레터 ☐ 성동구소식지 ☐ 기 고 문 ☐ 전자행정서비스 ☐ S N S ☐ 기타(리플릿 등) ☐ 없 음 ☐

● 홍 보 제 목 :

● 중점 홍보사항

-

-
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-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-

래미안하이리버(LED교체) 사업변경 승인

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결정단지(래미안하이리버)로부터 사업 범위 조정에 따른 사업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지원하고자 함

1 추진근거

○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 제6조(지원사업의 시행)

> **제6조**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 추진경과

○ 「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」(구청장방침 제121호, 주택과-7000, 2014.3.3.)

○ 「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결정」(부구청장방침 제256호, 주택과-20498, 2014.6.24.)

○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변경 승인 요청(2014. 10. 27.)

○ 소관부서(맑은환경과) 의견 수렴(2014. 10. 29.)

3 사업변경 내용

공동주택 명칭	사 업 명	변 경 전	변 경 후
래미안 하이리버 아파트	지하주차장 LED 교체	○ 총사업비: 40,444,000원 - 지하1~2층: 378 - B1(골프연습장), B2(헬스장): 290 - 관리실, 방재실: 33 - 옥외등: 93	○ 총사업비: 20,792,035원 - 지하1~2층: 430 - B1(골프연습장), B2(헬스장): 제외 - 관리실, 방재실: 58 - 옥외등: 72(벽부1등 제외) - 보안실(정문, 후문): 10
	§ 지원사업 교부금은 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총사업비 감소에 따른 지원금 감소 예정		

4 검토결과(승인)

○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에너지절감 효과 기대

- LED 교체사업은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 조명등을 더 교체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면에서 적정하며 변경내용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므로 승인하고자 함

(소관부서 의견)

- 골프연습장, 헬스장 등의 교체수량(290등) 대신 지하주차장이나 방재실 등(430등)의 교체수량을 증가 시키는 것은 점등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상시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는 장소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유리

(주택과 검토사항)

- 총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당초 총사업비 대비 지원결정금액의 비율(59.58%)로 최종 계약금액에서 지원금을 교부

사업명	1)사업비 합 계	2)소관부서 조정금액	3)구(區) 분담률	4)지원금 산정액	**5)지원금 결정액**	**6)비율**	비 고
지하주차장 LED 교체	40,444	40,444	50%	18,200	**24,097**	**59.58%**	어린이집 전환 단지

5 행정사항

○ 사업변경 요청 아파트 승인 통보

○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방법 및 정산안내. 끝.

---

1) 공동주택에서 당초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비
2) 소관부서(맑은환경과)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정한 적정 사업비
3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에서 정한 사업비 구청 지원 비율
4) 지원금산정액: 지원 조례 별표1에 따른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에 따름
⇒ 전체사업비(소관부서 조정 금액)×구(區) 분담률×별표 1호 증감률×공동체활성화 평가×노후도 평가
5)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결정한 금액
6)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7조(자체부담) 보조금 및 자체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 부담을 계산한다.